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이성희 · 유동훈**

I. 머리말

최근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 고용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청년 고용지원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지난해보다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1인당 9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을 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예산 3,320억 원(2019년 6,745억 원)을 투입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정책효과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정책효과 진단을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시행으로 청년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은 어떠한지, 어떠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신청과 심사, 장려금지원 등 전달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는 2018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를 시도하면서 몇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 『효과적인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통합적 연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정책 심층평가』(2019)의 내용을 토대로 요약·정리하였다.

**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musedori@kli.re.kr),

유동훈=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erojuli@kli.re.kr).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8년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고용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2017년 시범사업과 2018년 본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참여 자격요건, 장려금 지원금액 등에서 변화가 있었던 관계로 정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근로조건은 어떤지, 사업 시행과정에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고, 현재 수준에서 운영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2019년 이후에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II.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및 참여기업 특성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과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보험법의 고용창출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다.¹⁾ 2017년 시범사업으로 성장유망업종²⁾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해당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분의 임금을 1년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8년에 본격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 1만 명 취업지원을 목표로 1,930억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8년 6월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목표인원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대상 기업을 기존의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에서 상시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지원액도 기존에 3명 이상부터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던 것을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1명 이상 채용하면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증액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목표도 9만 명으로 증원하였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청년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성장유망업종: 신소재, IoT가전, AR·VR, 차세대 반도체,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499개 업종에 73만 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시행개선 내용

	시범사업(2017)	본사업(2018. 1~5월)	추경 이후 본사업(2018. 6월 이후)
대상업종	성장유망업종 (233개 업종, 18만 개 기업)	성장유망업종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등 추가) + 전후방산업 추가 (499개 업종, 73만 개 기업)	전체 업종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 포함)
기업규모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추가
지원방식	3명 고용시 1명 지원	3명 이상 고용시 비례지원 (예) 4명 고용시 1.33명	(30인 미만) 1명 고용시부터 지원 (30~99인) 2명 고용시부터 지원 (100인 이상) 3명 고용시부터 지원
지원금액	3년간 연 2,000만 원 (1인당 667만 원)	좌동	1인당 연 900만 원 고용위기지역* 500만 원 추가
지원요건	-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희망시 가입 보장)
한도	중소기업당 3명	기업당 90명(2+1기준 30명)	좌동

주 : *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8년 2만 9,566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3,320억 원이 지원되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순채용 인원은 7만 28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월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원)

	사업장		인원		금액
	각월별	순인원	각월별	순인원	각월별
2018년 1월	76	76	252	252	413,787,280
2018년 2월	141	141	479	479	761,139,140
2018년 3월	300	296	1,203	1,179	1,576,464,980
2018년 4월	445	370	1,923	1,505	2,072,600,780
2018년 5월	760	587	3,620	2,498	3,392,641,650
2018년 6월	2,832	2,530	10,714	8,238	11,538,969,880
2018년 7월	6,590	5,368	23,226	16,316	25,908,499,680
2018년 8월	9,360	6,296	34,164	18,808	37,410,009,310
2018년 9월	10,355	5,976	37,137	16,293	39,527,758,710
전 체	30,859	21,640	112,718	65,568	122,601,871,410

자료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월간통계」.

<표 2>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운영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월별 지급현황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범위가 2017년 시범사업부터 2018년 5월까지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되다가, 2018년 6월부터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신청기업이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 특성 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변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참여기업 표본을 나누어 분석했다. 전체 표본을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 중 시범사업 참여집단과 2018년 1~5월 본사업에 참여한 업체, 마지막으로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고용규모를 비교해 보면,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업체의 고용규모가 평균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참여업체와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의 고용규모는 각각 44명, 37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1~5월 본사업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업체에서 제한된 성장유망업종에 더해 전·후방산업 업종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들의 참여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6월 이후 참여업체의 고용규모가 작은 것은 성장유망업종 제한이 사라져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소규모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2018년 고용규모 현황

(단위 : 명)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 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종사자 수	44.83 (69.34)	63.93 (79.82)	37.83 (118.72)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3.61 (1.62)	5.17 (4.33)	5.24 (10.11)

주 :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수 : 737개)를 나타내며, '본사업 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 참여업체는 1~5월까지 사업참여업체 288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8,803개로 나누어 분석함.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재무정보를 토대로 분석해 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나타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재무제표상 특징을 살펴보면,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2017년 시범사업 때보다 2018년 본사업 참여업체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시범사업 참여업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본사업 참여업체가 4억 6천만 원을 지출한 데 반해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평균 5억 3천5백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업체 고용 및 재무제표 현황

(단위 : 십만 원)

	시범사업 참여업체	본사업 참여업체		
		1~5월	6월 이후	전 체
총자산	154,734 (373,675)	280,774 (779,218)	218,758 (1,015,313)	221,019 (1,007,677)
납입자본금	14,306 (44,468)	28,974 (136,076)	18,576 (154,726)	18,955 (154,084)
자본총액	79,594 (230,635)	177,079 (649,651)	109,965 (589,104)	112,412 (59,478)
매출액	132,882 (271,783)	270,295 (613,565)	224,943 (981,216)	226,596 (970,254)
영업이익	9,449 (36,113)	25,767 (108,567)	13,094 (55,598)	13,556 (58,407)
당기순이익	6,493 (29,262)	24,081 (94,981)	9,663 (46,679)	10,188 (49,334)
연구개발비	5,356 (11,592)	5,259 (17,546)	4,629 (34,365)	4,652 (33,898)
유형고정자산	48,560 (106,948)	109,166 (342,924)	67,634 (261,745)	69,149 (265,209)
고정자산	69,967 (157,963)	147,925 (394,328)	104,113 (442,364)	105,710 (440,742)

주 :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업체(표본수 : 528개)를 나타내며, '본사업 참여업체'는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의미함. 본사업 참여업체는 1~5월까지 사업참여업체 169개와 6월 이후 참여업체 4,406개로 나누어 분석함. ()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비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교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시범사업참여기업과 본사업참여기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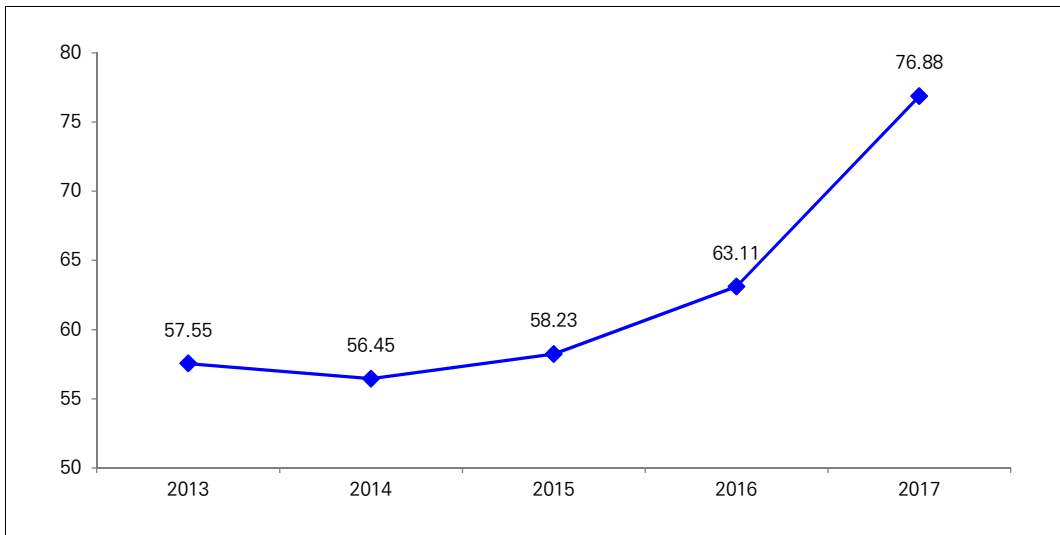
먼저 2017년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표본수 : 9,827개)과 비참여 중소기업 표본(표본수 : 208,497개)을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중 연구개발에 전혀 투

자하지 않은 사업체의 비중은 23.12%로 나타난 데 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기업 표본의 경우 66.91%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를 시범사업 참여업체(2017년)와 본사업 참여업체(2018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범사업 참여업체(표본수: 737개) 중 연구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사업체의 비중은 17.37%로 나타났고, 본사업 참여업체(표본수: 9,090) 중에서는 23.65%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참여업체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대상이 성장유망업종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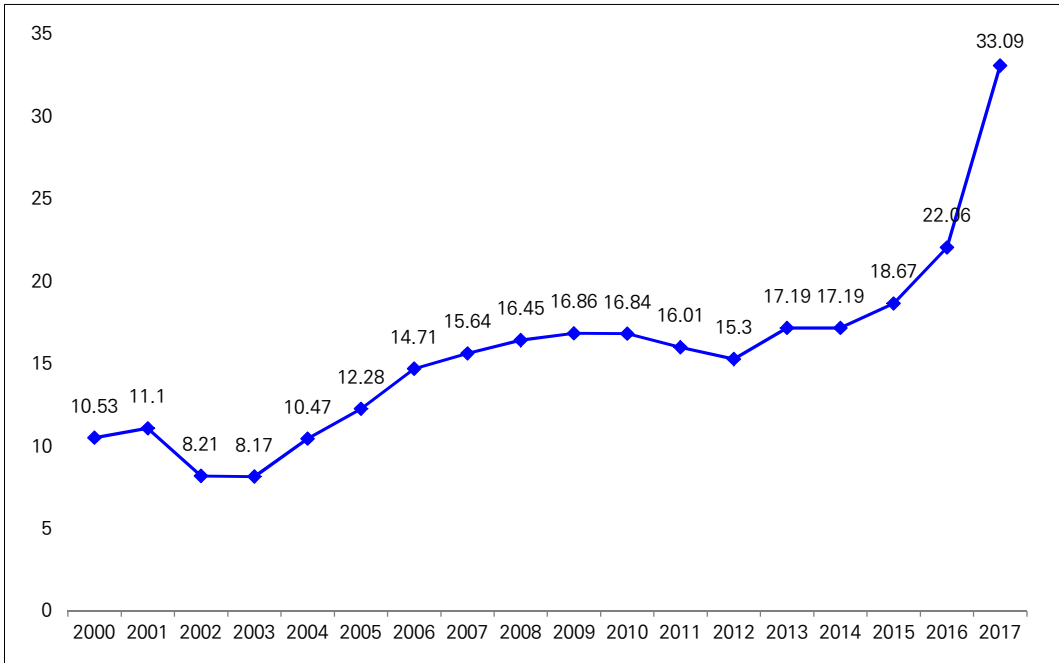


[그림 1]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의 연구개발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사업장 중 연구개발비 투자 사업체 비중은 2013년 57.55%(표본수: 5,932개), 2014년 56.45%(표본수: 6,633개), 2015년 58.23%(표본수: 7,548개)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에서 나타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개발비 투자 사업장 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표 5>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전체기업(청년고용장려금사업 참여-비참여 포함)

(단위 : %)



주 : 매년 전체사업체 중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업체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냄.

<표 5> 2017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 개)

		비중 (%)	표본수
제조업	장려금 참여기업	14.90	2,109
	장려금 비참여기업	5.26	1,348
운수 및 창고업	장려금 참여기업	109.38	844
	장려금 비참여기업	3.16	84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장려금 참여기업	348.19	817
	장려금 비참여기업	210.18	50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장려금 참여기업	25.55	562
	장려금 비참여기업	3.39	410

Ⅲ.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 근로조건 및 고용효과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청년취업자의 임금 및 고용유지 현황

<표 6>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채용 근로자 평균 약정임금을 입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본사업 참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 근로자 임금이 그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과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업체 근로자 임금차이는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표 7>에서 사업참여에 따른 청년 근로자의 퇴직률을 확인해 보면 2017년 시범사업 참여인원 중 12.01%,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참여인원 중 6.16%, 6월 이후 참여인원 중 6.37%가 2018년 9월 기준으로 퇴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범사업 참여인원의 퇴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입사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퇴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의 청년근로자 퇴직 현황을 업종별로 확인해 보면, <표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퇴사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종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으로 채용한 청년들이 고용지속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약정임금(당해 기준)

(단위: 명, 천 원)

신청시기	인원	평균임금
시범사업	3,801	2,140.87
본사업(2018년 1~5월)	2,400	2,298.87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29,712	2,217.01

주: 최소임금 4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표 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고용보험 이탈률(당해 기준)

(단위: 명, %)

신청시기	총인원	이탈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3,806	457	3,349	12.01
본사업(2018년 1~5월)	2,403	148	2,255	6.16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29,767	1,895	27,872	6.37

〈표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인원 퇴사비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단위 : 명, %)

신청시기	총인원	퇴사인원	근무인원	비율
시범사업	1,379	143	1,236	10.37
본사업(2018년 1~5월)	342	13	329	3.80
본사업(2018년 6월 이후)	3,280	125	3,155	3.81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는 본사업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전후 고용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아, 여기서는 간접적인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와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을 시범사업 참여기업, 2018년 1~5월까지 본사업 참여기업, 그리고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기업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는 고용보험DB 기준 전년 대비 종사자수 변화의 평균값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해 보았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는 2017년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4.27명,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기업은 5.93명,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기업은 2.49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본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이전 고용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에 소규모 기업의 참여가 많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사업 내 추가고용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후 일어난 추가고용인원수를 비교해 보았다. 2017년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3.56명,

〈표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변화(1)

(단위 : 명)

	2017년 시범사업 업체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업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이전 고용변화	4.27 (15.78)	5.93 (20.83)	2.49 (22.57)

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 추정 시 쓰인 표본수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경우 2,049개이고,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업체의 경우 925개, 2018년 6월 이후 참여업체의 경우 25,612개임. 추정값은 평균과 표준편차임.

<표 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고용변화(II)

(단위 : 명)

	2017년 시범사업 업체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업체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업체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3.56(1.57)	5.66(6.57)	5.11(9.61)

주 :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추정 시 쓰인 표본수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경우 732개이고,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업체의 경우 319개, 2018년 6월 이후 참여업체의 경우 9,300개임. 추정값은 평균과 표준편차임.

2018년 1~5월 본사업 참여기업은 5.66명, 2018년 6월 이후 본사업 참여기업은 5.11명의 추가 고용인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본사업 참여기업 간 추가고용 인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추진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시범사업과 본사업 제도변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먼저 구조적인 계량 분석이 아니므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사업 참여로 인한 고용변화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³⁾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후 고용의 변화를 추정하기에는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한 고용변화가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가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장려금사업의 시중손실효과(Dead Effect)를 감안하면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신규인력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에 관계없이 신규인력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 경우를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 효과

정부는 청년고용장려금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18.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공통적으로 청년층 고용촉진이라는 직·간접적인 목적을 지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11>에서 확인할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 이전 고용변화는 전체 고용변화를 나타내며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의 경우 사업참여 조건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고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시 주의를 요한다. 차후 추가적인 고용지표가 확보되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업체 비교

(단위 : 명, 천 원)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상시근로자 수	청년추가	26.64	107.88
	청년추가+내일채움	41.79	91.24
사업 내 추가고용인원	청년추가	3.37	6.67
	청년추가+내일채움	5.27	8.91
지원금액	청년추가	6,069.55	11,751.95
	청년추가+내일채움	10,325.10	17,615.15

주 : '청년추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업체 (표본수 : 11,207개)를 나타내며, '청년추가+내일채움'은 두 사업 모두 참여하고 있는 업체(표본수 : 5,392개)를 의미함.

수 있듯이 두 사업 모두에 참여하는 업체가 상시근로자 수, 사업 내 추가고용, 지원금액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업체 업종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업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고용지표상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두 사업 모두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추가적인 고용여력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 청년고용장려금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검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인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연구의 비중이 높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경우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연구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성장유망업종으로 제한했던 시범사업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취지를 감안하면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이 양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단계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 사업의 질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원 중소기업 기준 조정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고용효과에 대해 사업 참여기업의 인사담당자, 고용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채용증가 효과는 초임수준이 낮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초임수준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는 중견기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한 채용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2018년 6월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가 허용되었는데,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매년 공채에서 입사지원 경쟁률이 높아(1백 대 1) 채용에 어려움이 없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으로 특별히 추가 채용 확대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채용촉진이라는 애초의 목표에 집중하고, 제한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나,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릴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불여력이 높고, 경영이 안정돼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없더라도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내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시 기업 현장 확인 절차 강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FGI)에서는 청년고용장려금의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확인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지침에 따르면 고용센터는 중소기업에서 장려금을 신청한 사업주

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018년 이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예산은 증액되고, 지원범위는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센터의 담당 실무자는 증원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현장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FGI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을 컨설팅 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정수급을 유도하는 소위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길은 고용센터에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것인 만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반드시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 점검을 하도록 운영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일모아 사업’ 신고대상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운영현황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들은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사업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정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거나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고용지원금 지급 시 이를 ‘일모아’ 사업에 등재하도록 해서 정부의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일모아 시스템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센터 상담사들이 중복지원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고용지원금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모아 사업’을 개편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은 모두 등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담당자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에 본사업이 시행되고, 2018년 6

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관련 지침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고용센터에서 청년고용장려금사업을 맡은 상담사들은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지침 내용이 복잡해져 업무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고용부의 지침 체계화 및 기준 통일과 함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상담사들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KLI**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_____(2018),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_____(20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금재호 외(2017), 『고용장려금 2차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상호 외(2009), 『고용창출지원금 효과성 제고방안: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진영(2015),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효과 분석』, 예산정책처.
 이성희 외(2018),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16), 『일자리 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 Ayhan, S. H.(2013), “Do non-wage cost rigidities slow down employment? Evidence from Turkey,” *IZA Journal of Labor Policy* 2(1), p.20.
- Barza, R.(2011), “Essays in labor economics,” PhD disser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Caliendo, M., S. Kunn, and R. Schmidl(2011), “Fighting youth unemployment: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ZA Discussion Paper* No.6222.
- Egebark, J. and N. Kaunitz(2014), “Do payroll tax cuts raise youth employment?,” *IFN Working Paper* No.1001.
- Eppel, R. and H. Mahringer(2013), “Do wage subsidies work in boosting economic inclusion? Evidence on effect heterogeneity in Austria,” *WIFO Working Paper* No.456.
- Kugler, A., J. Jimeno, and V. Hernanz(2002), “Employment consequences of restrictive permanent contracts: Evidence from Spanish labor market reforms,” *IZA Discussion Paper* No.657.

- O'Leary, C. J.(1998),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active labor programs in Hungary,"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Technical Report* No.98-013.
- Roger, M. and P. Zamora(2011), "Hiring young, unskilled workers on subsidized open-ended contracts: A good integration programme?,"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pp.380~396.
- Webb, M., A. Sweetman, and C. Warman(2012), "How targeted is targeted tax relief? Evidence from the unemployment insurance Youth Hires program," *Working Paper*.